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351
----------	------

발의연월일 : 2017. 5. 12.

발 의 자 : 이효상 의원 외 10명

### 1. 주 문

-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현재 진원지인 경주는 물론이고 인근지역인 울산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확산으로 지진 발생 시 원자력 등 발전소 피폭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임.
-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원자력의 과반이상이 있는 곳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5km이내까지는 미흡하나마 만에 하나 일어날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으나 그 이외 지역은 지원이 되지 않아 범위를 30km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2. 제안이유

- 울산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에 의하면 시 전역이 방사능 누출이 확인될 때 주민 대피·소개 등의 긴급보호조치를 취하는 구역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미칠 피해와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공황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방사능 긴급보호 조치계획 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도 범위를 5km에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맞추어 30km이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함.

### 3. 기타

가. 결의문 :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2개소)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제196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5. 19(금) 11:00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인해 현재 울산과 인근 도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으로 이제는 대형재난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원자력의 과반이상이 원전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역으로 지진으로 인한 대형재난에 더욱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울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특별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범위가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범주를 벗어난 지역은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로 둘러싸인 울산으로서는 지진 등 흑시 닥쳐올 재난에 따른 대비가 철저해야 하기에 우선 아래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보면 "주변지역"이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고 하였는데 위 문구 중 반지름 5km를 30km로 확대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2015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능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 개정되었고 울산시 인근에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데 이 두 원전으로부터 각 30km이내 시 전역이 해당되며 유사시에는 피해규모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똑 같이 피해를 볼수 있는 지역으로 재난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1항제1호에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있어 반지름 5km를 30km로 확대 개정을 건의합니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함으로써 같은 울산시 시민들이 동등

하게 지원을 받아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 신구조문대비표(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u>반지름 5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u>반지름 30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p>

### 신구조문대비표(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b>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p> <p>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u>반지름 5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p>	<p><b>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b>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p> <p>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u>반지름 30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p>